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6. 5.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5월 27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3년 5월 31일

라. 상정일자 : 제175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3년 6월 4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국장 김찬재)

가. 제안이유

- 서울시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강화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성평등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주요 내용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
- 2) 성인지 통계 조문 신설(안 제4조의3)
- 3) 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한 지원 조문 신설(안 제4조의4)
- 4)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27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시행되어왔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관련 상위법령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성인지 통계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성평등 정책의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과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또한 기금의 명칭을 ‘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함.

○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6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시행되었으나 법 시행 후 많은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발표된 통계청자료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성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여성의 83.2%, 전체 응답자 75.5%가 차별이 심각하거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고용률도 2013. 4월 현재 남자 71%, 여자 49%로 나타남.

이에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맞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고, 각 기관의 책임있는 정책추진을 이끌어내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1년 9월 15일에 제정됨.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을 성평등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평가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08 호
----------	---------

제출연월일 : 2013.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가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 및 보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조례의 제명과 연계하여 변경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나. 성인지 통계작성 근거조항 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규정 신설

○ 여성발전기금 존속기한 신설 : 2017년 12월 31일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 4. 25 ~ 5. 15)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대상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의견반영(제4조의4 3항중)

(원 안) 구청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결과를
구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반영안) 구청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구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4)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여성”을 “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을 “성평등 정책”으로 한다.

제2조 중 “여성”을 “성평등”으로 한다.

제3조 중 “여성”을 각각 “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을 “성평등 정책”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여성정책”을 “성평등 정책”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여성정책 시행계획수립)”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정책”을 “성평등 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여성정책”을 “성평등 정책”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여성정책”을 “성평등 정책”으로 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성인지 통계) ①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통계의 생산과 구축을 위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4(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구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여성정보 제공 등)”을 “(성평등 정보제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정책”을 “성평등 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관련”을 “성평등 관련”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30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한다.

제15조 중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여성정책”을 “성평등 정책”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여성정책”을 “성평등 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여성문제”를 “성평등 문제”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여성문제”를 “성평등 문제”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여성정책담당주사”를 “여성출산정책담당주사”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중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여성정책”을 “성평등 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여성정책담당주사”를 “여성출산정책담당주사”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여성정책담당주사”를 “여성출산정책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 본 조례</u>	제명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 본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 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u>여성</u>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 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외 <u>여성정책</u> 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성평</u> <u>등</u> ----- ----- <u>성</u> <u>평등 정책</u> ----- -----.
제2조(구의 책무) 구는 남녀평등의 축 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 에 <u>여성</u>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2조(구의 책무) ----- ----- ----- <u>성평등</u> ----- -----.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에 <u>여성</u>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 항을 준수하고, 구의 <u>여성정책</u>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 ----- <u>성평등</u> ----- ----- <u>성평등 정책</u> ----- -----.
제2장 <u>여성정책</u>	제2장 <u>성평등 정책</u>
제4조(<u>여성정책</u> 시행계획수립) ①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라 한다)은 법 제 7조의 및 제 8조에 따라 <u>여성정책</u>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 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 다.	제4조(<u>성평등 정책</u> 시행계획수립) ① - ----- ----- ----- <u>성평등 정책</u> ----- ----- -----.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3. (생략)
4. 여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 (생략)

<신설>

<신설>

1. 성평등 정책-----
2. 성평등 정책-----
3. (현행과 같음)
4. 성평등 정책-----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성인지 통계) ①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통계의 생산과 구축을 위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4(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공포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5조(여성정보 제공 등) ① 구청장은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청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있는 법인 및 단체(법 제3조제2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와 그 밖에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

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수렴창구 운영) ① 구청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제5조(성평등 정보제공 등) ① -----
- 성평등 정책-----

-----.

② ----- 성평등 관련 -----

-----.

제7조(구청참여 확대) ① -----

--- 40퍼센트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단체의 지원) -----

----- 성평
등기금-----
-----.

제17조(의견수렴창구 운영) ① -----
- 성평등 정책-----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장 여성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정책 및 지역사회 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3. (생략)
4. 그 밖에 여성문제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제19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인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생략)
2. 여성문제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4. (생략)

제23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정책담당주사가 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성평등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기능) -----

----- 성평등위원회-----.

1. 성평등 정책 -----

2. 3. (현행과 같음)
4. ----- 성평등 문제 -----

제19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원 -----
-----.

1. (현행과 같음)

2. 성평등 문제-----

3. 4. (현행과 같음)

제23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여성출산정책담당주사-----.

③ (생략)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27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생략)

〈신설〉

제3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정복지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2. (생략)

3. 여성관련 단체장 또는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성평등기금

제27조(기금의 설치 등) ① -----
-----성평등을-----

----- 성평등기금-----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 성평등 정책-----

④ (생략)

⑤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정책담당주사가 된다.

제35조 (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생략)

② 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여성정책담당주사로 한다.

③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

----- 여성출산정책담당주사-----.

제35조 (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여성출산정책담당주사-----
-----.

③ (현행과 같음)